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 소독업 지위승계신고 누락시 행정처분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작 성 자	이름	진성림
	담당부서 (과)	감염병정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홍정익		연락처	043-719-7130
	과장	이선규		이메일	forest777@mail. go.kr

2026. 09. 30.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홍정익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소독업 지위승계신고 누락시 행정처분기준											
	2.규제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3.위임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감염병예방법」 제52조의2 등 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관련 규정 신설('26.10.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59조제1항제1의2호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소독업자 및 소독업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소독업자</td><td>10,305(2026.6.30.기준)</td></tr><tr><td>피규제자</td><td>소독업 지위 승계하려는 자</td><td>약 20명(' 25년 기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독업자	10,305(2026.6.30.기준)	피규제자	소독업 지위 승계하려는 자	약 20명(' 25년 기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소독업자	10,305(2026.6.30.기준)											
피규제자	소독업 지위 승계하려는 자	약 20명(' 25년 기준)											
9.규제목표	○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실효성 및 행정처분의 일관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1(행정처분기준) 1. ~ 2. (생 략) <u><신 설></u> <u>3. ~ 6.</u> (생 략)	별표 11(행정처분기준) 1. ~ 2. (현행과 같음) <u>3.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u> <u>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u> <u>4. ~ 7.</u> (현행과 같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배경) 「감염병예방법」 제52조의2 등 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관련 규정 신설(26.10.8.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정부개입 필요성) 지위승계신고 누락 시 대표자의 법정교육(「감염병예방법」 제55조) 이수 의무에 대한 회피 및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잘못된 소독으로 인한 보건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지위승계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조항 부존재
	내용	-
규제대안1	대안명	지위승계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설정
	내용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처분 기준 도입
규제대안2	대안명	지위승계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설정
	내용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완화된 처분 기준 도입

○ 대안의 선택 근거

- 영업을 유지되며 대표자가 변경되는 상황으로서 주요 내용의 변경과 유사한 실질을 지니므로 변경신고와 동일한 처분 기준 도입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3. 규제목표

- 영업자 지위승계의 적절한 관리 및 행정관리의 실효성 확보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적 지위승계 신고 의무에 대한 이행을 제고하여 소독업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며, 1차로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시정의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을 지님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 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 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 없음
	판단 근거	해당 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 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 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특이사항 없음

○ 타법사례

-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공중위생관리법**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완화된 기준*, **야생생물보호법**은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와 동일 기준 설정

* 숙박업 업종 간 변경 및 숙박업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여 영업의 실질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영업의 내용이 유지되는 지위승계 신고에 비하여 강화된 처분기준 부과

구분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2차	3차	4차
공중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1호	영업장 폐쇄명령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의 명칭, 상호, 영 제4조 각 호에 따른 숙박업 업종 간 변경을 하였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2호	경고 또는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장 폐쇄명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야생동물을	법 제22조의9 제2항제2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관한 법 시행규칙 별표 12	양도·양수한 경우					
	법 제22조의5제4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의9 제2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조의9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소독업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위승계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피규제자 준수에 문제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25년 지위승계 건은 약 20건으로 행정 부담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소독업자의 소독업 운영 연속성 보장을 위해 지위승계 규정 신설 하였으며, 소독업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지위승계 신고 누락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한 것으로 규제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지위승계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설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지위승계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설정>